

공정위, 경제분야 민생관련 규제개혁방안 제시

경제규제개혁위원회(위원장: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)는 지난 10월 2일(목)에 경제분야 민생관련 규제 개혁방안 3개 분야, 12개 과제 및 「미술장식품 설치의무 개선과제」 등에 관한 규제개혁방안을 보고하였는데, 동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중소사업자 관련 규제완화

1-1. 중소기업 근저당설정시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면제

가. 규제현황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기를 받거나 등기·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(주택건설축진법 제16조 및 주택건설축진법시행령 제15조의2)
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지방공기업, 금융기관은 매입의무를 면제(주택건설축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3)
 - 외국인투자기업, 언론기관 등도 매입대상항목의 일부를 면제(주택건설축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3)
 - 철강, 비철금속, 조선, 기계화학, 전자공업부문의 경우 공장시설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도 면제(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처리규칙 별표2)

-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근저당설정금액의 $10/1000$ 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의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

* '96년 중소기업의 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액

(건설교통부 추정) : 약 1,807억원

* '96년 소기업의 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액

(건설교통부 추정) : 약 720억원 = $1807 \times 40\%$

(중소기업 대출중 소기업 대출비율 추정치)

나. 개선방안

- 1단계 : '98. 7월부터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소기업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면제
- 2단계 : 2000년부터 면제대상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
 - * 부족자금의 충당을 위해 기존 매입면제대상의 합리적 조정, 재원조달방법의 다양화 등 보완대책 강구

다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재정경제원·건설교통부

- 통상산업부와 합의
- 관계부처 조치계획 : '98년 상반기중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개정

1-2. 전기·전기통신공사업자의 공제조합 의무출자제도 완화

가. 규제현황

- 전기공사업자 및 전기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코자 할 경우 각각 전기 공사업자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사업자공제조합에 일정 좌수를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함
- 근거법령

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1항 및 별표1(면허기준)	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6조1항 및 별표1(허가기준)
-1종 공사업 면허취득시 • 전기공사업자공제조합에 300좌 를 의무적으로 출자 ※ 1좌당 약 20만원	-일반공사업 1등급 허가시 • 전기통신공사업자공제조합에 250좌 를 의무적으로 출자 -일반공사업 2등급 허가시 • 전기통신공사업자공제조합에 100좌 를 의무적으로 출자 ※1좌당 약 20만원

- 도입배경
 - 공제조합의 자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무출자제 도입

나. 개선방안

- 전기·전기통신공사업자의 공제조합에 대

- 한 “의무출자제”를 '98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2002년 7월부터 “임의출자제”로 전환
-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별표1(면허기준)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6조 별표1(허가기준)을 각각 개정

〈건설교통부의 완화 사례〉

- 금년 7월 建設產業基本法施行令 개정시 挑除組合과 관련된 조항을 개선
- 건설공제조합 : '98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임의출자제로 전환
 - 예) 토목공사업 : 98. 6. 30까지 250좌이상, 99. 6. 30까지 200좌이상, 2000. 6. 30까지 100좌이상
- 전문건설공제조합 : '98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임의출자제로 전환
 - 예) 미장방수공사업 : 98. 6. 30까지 50좌이상, 2000. 6. 30까지 40좌이상, 2001. 6. 30까지 20좌이상

다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통상산업부 및 정보통신부와 합의

- 통상산업부 조치계획 : '98년 상반기중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
- 정보통신부 조치계획 : '97년 하반기중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

1-3. 인쇄소 등록요건 완화

가. 규제현황

- 인쇄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

서에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쇄시설이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등록청(시·도)에 제출 의무화(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제2호)

* 인쇄시설 : 평판인쇄기, 활판인쇄기, 윤전기, 조판시설 등

□ 인쇄소는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등록청에 제출 (시행령 제2조)

*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쇄소를 경영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별금, 구류 또는 과료 부과 (법 제6조)

나. 개선방안

□ 인쇄소 등록시 인쇄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허용

1-4. 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면허 및 종차시 총당되는 차량의 차령제한 완화

가. 규제현황

□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차종 및 사업구분에 따라 일정 년한을 초과하여 운행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의2제1항,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2조 별표1의2)

*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의 차령제한을 2000년부터 폐지할 계획(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

예 기 반영 : 국회 계류 중)

□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·등록 또는 종차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승용자동차·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구분에 따라 각각 6월·2년 및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(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의6제1항)

〈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및 신·종차시 차령제한〉

차종	사업의 구분	사용연한 (차령)	신·종차시 차령 제한
승 자 동 차	운송사업용	개인택시	5년
		중·대형 개인택시	5년 6월
		일반택시	3년 6월
		중·대형 일반택시	4년
	자동차매여 사업용	중·소형	5년
		대형	8년
	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	중·소형	5년
		대형	8년
	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	10년	2년
승 합 자 동 차	기타 사업용	8년	
	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	8년	1년
	기타 사업용	11년	

다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건설교통부와 합의

□ 건설교통부 조치계획 : '97년 하반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

1-5. 컴퓨터게임장의 설치 및 이용요금 규제완화

가. 규제현황

- 컴퓨터게임장 등 유기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 - 컴퓨터게임장의 경우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영업허가가 금지(공중위생법 제5조 및 복지부고시 제96-53호)
- 컴퓨터게임장의 전자유기기구 이용요금을 복지부고시로 정함
 - ※ 다만, 전자사격기 등 체력단련용 유기기구의 이용요금은 자율화

나. 개선방안

- 컴퓨터게임장의 지하층 설치금지 및 요금규제를 폐지
- 규제폐지로 예상되는 청소년 보호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문화체육부에서 마련 중인 컴퓨터게임산업발전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시행

다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재경원, 복지부, 문체부, 정통부와 합의

- 관계부처 조치계획 : '98년 상반기중 관련고시를 폐지 또는 개정하여 '98년 7월부터 시행

1-6. 옥외광고물의 광고내용 변경절차 간소화

가. 규제현황

- 옥외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시 그 형태·규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의무화(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조, 제5조)

구 분	옥 외 광 고 물
허가대상	4층이상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, 옥상간판, 애드벌룬,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등
신고대상	3층이하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, 현수막, 벽보,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등

※ 법령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시·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권한위임되어 시·군·구청장이 관할

- 시·군·구에 설치된 [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]에서 옥외광고물 허가·신고 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심의(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)
 - 심의대상 :
 - 1) 법령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한 사항
 - 2) 시·군·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

나. 개선방안

- 허가대상인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내용의 단순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전환하여 사후규제토록 함
 - 변경사항이 허가·신고수리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, 관할관청은 광고물의 철거 등 명령 가능(동법 제10조)

〈 허가 · 신고수리의 기준 〉

- 금지되는 광고내용(동법 제5조)
- 광고물의 표시 · 설치방법
(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2조)
- 광고물이 금지되는 지역, 물건
(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)

□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의 구체화

-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허가 · 신고수리의 기준 중 객관적 판단이 곤란한 동법 제5조(금지되는 광고내용)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
- 기타 허가 · 신고수리의 기준중, 광고물의 표시 · 설치방법(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2조), 광고물이 금지되는 지역, 물건(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) 등은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가능하므로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

다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내무부와 합의**□ 내무부 조치계획 :** '98년 상반기중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'98. 7. 1부터 시행**2. 국민불편 관련 규제완화****2-1. 건축물 철거관련 절차 개선****가. 규제현황**

-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,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철거 · 멸실신고를 해야 하며, 신고 후에 별도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절차를 거쳐야 함
- 건축물 소유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철거 신고(건축법 제27조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24조)
- 건축물 소유자는 철거 · 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때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읍 · 면 · 동장의 확인서와 철거 · 멸실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말소신청(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)

나. 개선방안

-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절차 생략
 - 건축물 철거 · 멸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
 - 철거 · 멸실신고를 접수한 동사무소에서 시 · 군 · 구청 지적과에 통보하여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도록 조치

다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건설교통부와 합의

- 건설교통부 조치계획 : '97년 하반기 중 건축물 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

2-2. 건축물 용도변경시 도면작성 자격자의 범위 명문화

가. 규제현황

□ 건축물의 용도변경시

-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·후의 평면도,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·방화·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(건축법 제14조, 동법 시행령 제14조, 동법 시행규칙 제6조)

□ 평면도 등 건축물 현황도면은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이 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가 작성(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)

※ 건축물 현황도면의 종류

- 배지도, 평면도, 부설주차장의 도면 등

※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공문으로 각 시·군·구에 시달 ('93. 6월)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(당해 건축물에 한함)
- 당해 시·군·구의 건축직 공무원 또는 도면작성 능력을 보유한 공무원
- 건축기사 1급 또는 2급 자격자로서 건축분야 경력자
- 관련 기술자 등 자격소지자,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자

※ 「시장등이 인정하는 자」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('96. 11월)에 따라 모든 시·군·구에서 '96. 12월까지 도면작성 자격자의 범위를 사전 공고

나. 개선방안

□ 건축물 현황도면작성 자격자의 범위를 명문화

다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건설교통부와 합의

□ 건설교통부 조치계획 : '97년 하반기 중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

2-3.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등 징수제도 개선

가. 규제현황

- #### □ 자치단체의 회관시설사용을 허가하거나 동 시설을 이용한 교육관련 수강 등을 신청할 때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(지방자치단체 여성회관 또는 복지회관 등 설치·운영 조례 관련 규정)
- 대부분의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서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 수수료 등을 선납도록 하고 있으며,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은 회관의 귀책사유 또는 시·도지사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반환

나. 개선방안

- 회관시설의 이용자들이 신청 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등을 반환하도록 관련규정 개정
 - 시설 등 이용일전 일정기일(예 : 5일 또는 7일)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
 - 시설 등 이용일전 일정기일(예 : 5일 또는 7일) 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일정액의 위약금(예 : 10%) 공제 후 잔액 반환
 - 시설 등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

다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내무부와 합의

- 내무부 조치계획 : '97 하반기중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상의 관련 규정 개정 권고

2-4. 장애인 자녀의 학비지원절차 개선

가. 규제현황

- 장애인 가구의 자녀 중 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해 수업료 등 학비 지급(장애인복지법 제22조)

나. 개선방안

- 읍·면·동에서 학비지원 대상자임을 해당 학교에 직접 통보

다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보건복지부와 합의

- 보건복지부 조치계획 : '97년 하반기중 「장애인복지사업지침」개정

3. 공동주택 관련 규제완화

3-1.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제도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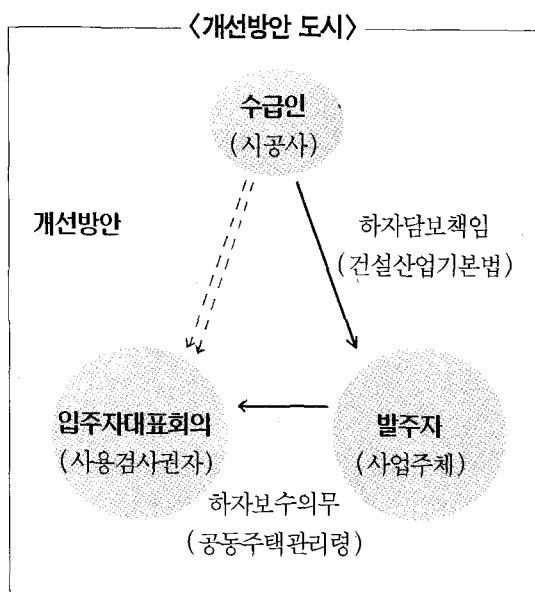
가. 규제현황

- 공동주택을 도급계약으로 건설·공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하나의 공동주택에 대해 이중으로 하자보수보증

나. 개선방안

- 시공사(수급인)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대해 하자보수보증을 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을 한 것으로 간주
- 건설공제조합, 주택공제조합등이 발급하는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 명의를 사업주체(발주자)로부터 사용검사권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

- * 현재 건설공제조합은 이중보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규정(보증규정시행세칙 제67조)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사업주체(발주자) 명의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변경해 주고 있음
- * 개선방안의 경제적 효과 : 총공사비 3백억원인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보증수수료 270만원 절감 가능
[300억원(총공사비) × 3% (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)
× 0.3% (보증서발급 수수료율)]



다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건설교통부와 합의

□ 건설교통부 조치계획 : '98년 중 공동주택관리령 개정

3-2. 공동주택 복리시설 증축절차 간소화

가. 규제현황

-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신·증축 시 원칙적으로 입주자 2/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·군수·구청장등의 허가 필요(공동주택관리령 별표2)
 - 다만,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신고함으로써 증축 가능(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2)

나. 개선방안

- 소규모 증축시 신고대상이었던 부대 및 복리시설의 범위에 노인정과 입주자집회소를 추가

다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건설교통부와 합의

- 건설교통부 조치계획 : '98년 중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

4. 「미술장식품 설치의무제도 개선」등 과제의 규제개혁 추진현황

4-1.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제도 개선

1. 당초 개선방안

('97. 6. 27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심의)

- 건축주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설치과정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완화

2. 추진현황

〈 확정된 개선방안 〉

- 설치대상 : 현행 연면적 1만㎡ 이상 유지
- 설치비용
 - 현행 건축비용의 1% 이상에서, 연면적 2만㎡ 이하는 0.7%, 2만㎡ 초과는 2만㎡ 까지 0.7% + 2만㎡ 초과 0.5%로 하향 조정
 - 시·군지역 건축물의 설치비용은 일반건축물 0.5~0.7%, 공동주택 0.1~0.7%로 하향 조정
- 미술장식품의 범위 : 공연장·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 포함
- 미술장식품 심의 강화 및 사후관리 제도화

* '97 하반기 중 문화예술진흥법 개정

4-2.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 허용

1. 당초 개선방안

('97. 6. 27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심의)

- 건설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건축사에게 건축물 설계 허용

2. 추진현황

- 〈제1안〉 자가업무용(그룹소유 포함) 건축물에 한하여 '98년부터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에게 허용하고, 2000년도에 확대 여부 재검토
- 〈제2안〉 텐기대상공사에 한하여 '98년부터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에게 설계업무 허용

- '97. 8. 27 「규제개혁추진회의」에서 소위원회가 제시한 안 중 제1안을 채택

4-3. 의약품유통관련 규제완화

1. 당초 개선방안

('97. 6. 5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심의)

- 단순의약품(OTC)의 약국외 판매 허용
 -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 없는 단순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에서도 판매를 허용
-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 개선
 - 제1단계 : 현행 「표준소매가격」 표시제도는 유지하되, 거래단계별 판매가격 하한에 대한 규제를 철폐
 - 제2단계 : 의약품가격을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표준소매가격제도 폐지
- 제약회사의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직거래 허용
 - 종합병원에 대한 직거래를 허용하되 3년간 시행을 유예

2. 추진현황

- 「의료개혁위원회」에 의견제출 요청 ('97. 6. 11)
- 「의료개혁위원회」에서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논의
 -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
 -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 개선
 - 제약회사의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직거래 허용
- '97. 10월중 의료개혁위원회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료개혁위원회 안과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안을 종합하여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
 - 확정할 계획

〈참고 : 의료개혁위원회 논의 내용〉

-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
 -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단순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를 원칙적으로 허용
 - 다만, 약국외 판매허용 범위, 허용시기 및 판매소의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의약품 분류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
-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 개선방안
 - 표준소매가격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
 - 다만, 제도폐지시의 영세약국 도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 필요
- 제약회사의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직거래 허용
 -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구입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의견일치
 - 다만, 제도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

알림

한국공정경쟁협회 창립 3주년 기념 강연회 개최

본 협회에서는 협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기업의 경쟁질서에 대한 새로운 좌표를 모색하기 위하여 이종훈 중앙대학교 총장, 독일연방 Dieter Wolf 카르텔청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이남기 상임위원을 연사로 모시고 다음과 같이 창립 3주년 기념 강연회를 갖고자 하오니 회원(사)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.

- 일 시 : 1997년 11월 25일(화요일) 10:00~18:10
- 장 소 :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
- 참 가 비 : 무료

* 강연회에 대한 문의는 본 협회 기획부(☎ 775-8870~2/F 775-8873)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